

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 참여자(사업장) 유의사항

* 본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에 한하며 타본부/지사 건은 해당 기관에 관련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보조지원 설비투자 유의사항

※ 본 유의사항 미 준수 시 해당 재정지원 건은 전체 또는 일부 취소됩니다.

※ 투자완료 확인 시 안전난간/작업발판/승강설비 미설치 등으로 위험이 다수 확인되는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예정.

○ 보조지원설비 임대 및 설치

- 계약체결: 사업주와 공급업체간 시스템비계 임대·설치·해체 및 안전방망 설치계약
- 비계 설치는 반드시 결정통보일 이후로 설치하여야 함.
 - 단, 시급성에 따라 접수 서류 확인일 이후 선설치는 가능하나 신청반려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임.
- 비계 설치 시 설치자의 자격확인 철저
 -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 가능자격 [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]
 - 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
 - ②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(단, 층높이 10m 미만인 작업만 가능)
 - ③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자
 - ④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 교육 이수자
- 불량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사용제한
 -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부적합한 방망 사용 및 부식 또는 파손 등의 중대 결함이 있는 불량자재를 임대·설치·구입하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
- 시스템 비계 설치기준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준용) 준수
 - 시스템비계 구성품목 일체를 설치하되,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준수
 - 시스템비계(가설) 기자재는 반드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(KCs 각인 필수)
 - 비계 설치높이 : 건물 높이 + 1m 이상
 - 작업발판 폭 : 각 단별 작업발판 2열(40cm×2ea)설치를 원칙(사업장 여건상 부득이 1열 설치 시 설치수량 만큼 정산)
 - 벽연결(벽이음) :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비계의 전도 방지조치 실시

- 가설계단 설치 : 1개소 이상(건물외주(4면)길이 50m 이상 시 1개소 추가)
 - ※ 계단 등 승강설비로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비계는 투자완료 확인 시 설치면적 제외처리.
 - ※ 가설계단은 돌출계단으로 설치하고 도심지 공사 등 돌출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내부계단 설치 가능
- 안전난간 : 작업발판 [외측] 및 [구조물-비계 간 이격거리 30cm 이상인 내측] 2단 설치
- 안전방망 설치기준(KOSHA Guide* 설치 기준 준용) 준수
 - * 공단 홈페이지의 법령지침정보에서 확인.
- 수직보호망
 - ① 확인사항 :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
 - ② 방망고정 : 시스템 비계 수직재 및 수평재에 견고하게 고정
 - ③ 수직보호망 설치시기: 시스템비계 설치 후 1주일 이내 설치
 - ※ 수직보호망 설치 후 전경사진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지연 설치 여부확인(필요 시 현장방문)
-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) 또는 추락방호망
 - ① 확인사항 :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
 - ② 수직보호망을 시스템비계가 설치된 전면에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생략 가능
- 사다리형 작업발판
 - 대 상 : 작업높이 기준 최대높이 3.5m 이하인 것으로 S마크 인증품에 한함
- 투자계획의 변경
 - 변경 및 승인 요청
 - 지급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 일선기관에 공문으로 변경 요청
 - ① 지급대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명, 대표자 등의 이력이 변경되는 경우
 - ② 결정된 보조대상 설비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
 - ※ 예) 수직보호망에서 플라잉넷로 변경 또는 플라잉넷에서 수직보호망으로 변경 시

○ 설치·구입완료 확인

- 설치완료시 확인요청 기한 (사업주→공단)

품목	설치완료 확인 요청 기한
시스템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	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

※ 보조대상자의 연장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

- 사업주의 설치·구입 완료 확인요청(사업주→공단)

- ① 요청기한 : 보조설비(시스템비계 등) 설치·구입 완료일로 부터 5일 이내
- ② 요청방법 : 보조지원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를 설치·구입 완료 후 5일 이내 공단 일선기관장에게 제출
- ③ 요청서류

기본서류

- ◆ 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- ◆ 수직보호망 설치 전경 사진(해당시)

- 공단의 설치·구입 확인방법

- 현장방문 : 현지방문 후 설비투자완료 확인표와 설비 투자(설치)완료 점검
* 적정 설치여부 확인 및 보완사항 확인

※ 투자계획서 미 이행 시 : 보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, 기간 내 미보완 시 결정 취소

○ 보조금 확정금액 통보 및 지급요청 안내(공문)

※ 보조설비 설치면적, 수량 등이 감소하여 보조금 감액 시 감액사유, 이의제기 안내 및 절차 등을 공문으로 통보(설계변경 등 설치면적이 증가하여도 최초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)

○ 보조금 지급요청(사업주→공단)

- 보조금 확정금액 통보 및 지급요청 안내 공문 수령 후 사업주 보조금 지급요청

보조금 지급요청 제출서류

- ◆ 설비 임대·설치·해체·구입 계약서 사본
- ◆ 청렴의무 이행계약서(사업주 및 공급업체)
- ◆ 입금 희망통장 사본(사업주) 1부
- ◆ 입금증빙서류(실투자금액, 자부담금,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입금한 입증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)
- ◆ 전자(세금)계산서 사본 1부

○ 보조금 선지급 및 보조(잔)금 지급

- 보조금 선지급

- 선지급 목적 :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시스템비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업주 요청 시 보조금을 선지급 가능
- 요청시기 : 설치·구입 등 투자진행 중인 현장
- 지원결정금액의 70% 이내 보조금 선지급 가능(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)

- 선지급 이행보증보험증권

- ① 보험기간 : 선지급 요청일 이전일~공사종료일(공단전산기준)+6개월
- ② 가입금액 : 선지급 금액의 100분의 120

- 사업주 선지급 요청 서류

- ◆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착수금 지급신청서 1부
- ◆ 설비 임대·설치·해체·구입 계약서 사본 1부
- ◆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사업주 및 공급업체) 1부
- ◆ 입금 희망통장 사본(사업주) 1부
- ◆ 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

- 보조(잔)금 지급

- 요청시기 :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완료 현장
- 지급한도
 - ① 보조금 선지급 사업주 : 최종 보조금 확정금액에서 선지급을 제외한 잔금
 - ② 보조금 선지급 미요청 사업주 : 최종 보조금 확정금액 전체
- 보조(잔)금 지급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보조(잔)금 지급가능

- ◆ 공단의 보조설비 설치·구입 완료 확인결과 투자 계획과 부합되고, 보조설비(시스템비계 등)설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가 완료된 경우
- ◆ 보조설비(시스템비계 등) 전체 물량의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사업주

- 최종 실투자비용 변경(감액)이 있는 경우(시스템비계 해체 후) : 변경된 세금계산서 징구

※ 최종 실투자비용 초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인 후 환수 조치

- 이행보증보험증권(완료 확인 후) 보험 기간 및 가입금액

① 보험기간 : 설치·구입 투자 완료요청 이전일~공사종료일(공단전산기준)+6개월

※ 공사종료(공단ERP기준)후 2개월 이내까지 입금입증서류 미제출 시(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업장 포함) 보조취소 및 보조금 반환 절차 실시

(최종적으로 보조금 미반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만료일 20일 이전 본부 재정사업부로 공문제출)

② 가입금액 : 최초 보조금 결정통보금액

- 매입(매출)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

· 제출대상 : 사업주 또는 공급업체(시스템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)

· 제출시기 : **차기년도 1월말까지**

○ 보조결정의 취소

- 이의제기 기간 부여 : 취소 대상자에 대하여 **20일 이내의 이의제기** 기간 부여

- 보조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조건

전부 취소	◆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◆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(보조금 지급 전)
전부 또는 일부 취소	◆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 외 사용한 경우(페이백 등) ◆ 보조시설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◆ 보조시설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 등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않은 경우 ◆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(최대 5개월) 설치완료 확인요청을 미실시하는 경우 ◆ 설치완료 확인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내(30일)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* 설치 미완료 구간 자체개선으로 투자계획 변경승인 후 설치 완료구간의 투자완료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취소 제외 ◆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◆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금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(기 지급 보조금 환수) ◆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◆ 그 밖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일선기관장 등이 인정하여 보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

○ 보조금 환수

-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지침(보조금 환수 및 처리절차 기준)에 따라 운영

나.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 업무 흐름도

안전보건공단	사업주	공급업체
	① 보조금 지급 신청 ㉠ 신청서 ㉡ 투자계획서 (a)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(b) 도면 및 서약서 (c) 기술지도계약서 ㉢ 중소기업지원 정보활용 동의서 ㉣ 사업자 등록증 사본	① 보조금 지급 신청 ㉠ 사업자 등록증 사본 ㉡ 비계구조물·해체공사 건설업 등록증(해당시)
② 신청서 접수, 투자계획 확인 ㉠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공단↔사업주) ㉡ 투자계획 확인표 ↳ 제출서류 확인(필요시 방문)		
③ 보조심사 위원회 상정(필요시) ㉠ 회의록		
④ 보조 대상 결정·통보 [15일 이내] ㉠ 결정 통보서 ↳ 투자완료 확인요청서(건설업) 1부 포함		

	⑤ 시스템비계 임차 및 안전 방망 등 구입·설치 ㉓ 계약체결(사업주↔공급업체) ㉔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사업주↔공급업체)	⑤ 시스템비계 임대 및 안전 방망 등 설치·납품 ㉓ 계약체결(사업주↔공급업체) ㉔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사업주↔공급업체)
⑥ 투자완료기한 도래 안내 [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] ㉓ 투자완료기한 도래 안내 및 연장 승인요청 시 제출서류 안내		
	⑦ 연장승인 요청 ㉓ 투자지연 시 연장요청	
⑧ 투자완료기한 연장승인 ㉓ 1회, 최대 1개월 이내 승인		
	⑨ 설비 투자완료 확인 요청 (사업주→공단) [설치완료일로부터 5일 또는 연장 승인기한 이내] ▶필수 제출서류 ㉓ 설비투자완료확인 요청서 ㉔ 수직보호망 설치 전경사진(해당시) ㉕ 사다리형 작업발판 반입사진(해당시)	
⑩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[확인요청 후 근무일기준 10일 이내] ㉓ 설비투자완료 확인표 ㉔ 사진 첨부 ㉕ 설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㉖ 산재소멸 여부 확인 후 편철(ERP 확인) ※ 패트rolled 현장점검 병행가능		
⑩-1 보완요청(공문) [완료확인 시 지체없이] ㉓ 투자계획서 미부합 시		
	⑪ 보완 및 투자완료확인 재요청 [설치완료일로부터 5일 또는 보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] ▶필수 제출서류: 상동 ㉓~㉕ ⑪-1 [설치완료 불가 시] 투자계획 변경 승인 요청 및 투자완료확인 재요청 [보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] ▶필수 제출서류 상동 ㉓~㉕ ㉖ 변경사유서(공문에 사유 기재) ㉗ 변경된 투자계획서 (자체개선 및 보조구간 명기) [예시] 1~5층 보조, 6층 자체개선	

⑫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[확인요청 후 근무일기준 10일 이내] ㉞ 설비투자완료 확인표 ㉟ 사진 첨부 ㊱ 설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㊲ 산재소멸 여부 확인 후 편철(ERP 확인) * 정산과 무관한 보완확인은 서류확인 가능		
⑫-1 변경 승인 및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[확인요청 후 근무일기준 10일 이내] ㉞ "투자계획변경 기술검토서" 작성 및 조건부 변경승인(자체개선 완료 증빙사진 제출 조건) ㉟ 변경 계획 대비 설비투자완료 확인표 작성, 정산(감액) ㊱ 사진 첨부 ㊲ 설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㊲ 산재소멸 여부 확인 후 편철(ERP 확인)		
⑬ 보조금 지급요청 안내(공문) (공단→사업주) ㉞ 보조금 변경·확정금액 안내 ㉟ 보조금 지급요청 안내 ※ 투자계획변경승인 문서 병행 가능		
	⑭ 보조금 지급요청 (사업주→공단) ㉞ 보조지원설비 보조금 지급요청서 ㉟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사업주 및 공급업체) ㊱ 입금 희망통장 사본(사업주) ㊲ 전자(세금)계산서 사본 ㊲ 입금증빙서류(실투자금액·자부담금·부가세 전체를 입금한 입증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) ※ 투자계획변경 시 자체개선완료 증빙사진 제출	
⑮ 보조금 지급 ㉞ 국세청 폐업 확인 ㉟ (세금)계산서 사본 편철		
	⑯ 입금증빙서류 제출 (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) (사업주→공단)	
		⑰ 매입(매출)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(사업주, 공급업체→공단)

다.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징수, 참여제한 조치 안내

○ 자부담금 대납,페이백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

— [부정당 행위에 따른 추가환수 및 신청제한 기간]

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~제4항
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→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재부가금, 신청 제한기간 5년
2.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→ 신청 제한기간 3년
3.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,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,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, 관리, 사용하지 않은 경우 →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, 신청 제한기간 3년
4.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→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, 신청 제한기간 3년
5.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→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, 신청 제한기간 3년
6.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→ 신청 제한기간 3년

라. 금년도 재원초과 지원사업장에 대한 안내

○ 금년도 재원초과를 초과하여 결정되는 사업장의 경우

- 해당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금년도에 이루어지나 보조금은 차년도에 지급될 수 있음.